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					
보도 일시	2025. 11. 21.(금) 12:00 <11. 22.(토) 조간>	배포일	2025. 11. 20.(목)		
담당 부서	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	담당자	박준용 팀장(043-880-5821) 이수환 과장(043-880-5823)		

[소비자안전주의보]

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, 저온화상·피부손상에 주의해야

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(CISS) 분석 결과, 다리·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3년간 다리·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, 증상의 76.6%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.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·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.

- ※ '다리·발'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: ('22년) 37건 → ('23년) 26건 → ('24년) 81건 → ('25년 10월) 61건
- ※ '다리·발'부위 위해 증상 유형: '화상' 55.1%(113건), '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' 21.5%(44건), '타박상' 7.3%(15건) 등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조사대상 10개 제품, 최고 온도 측정 결과 안전기준 '적합'

다리 마사지기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'전기 마사지기'로 분류되어 관련 안전기준^{*}을 준수해야 한다.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^{**}.

- *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(KC 60335-2-32) 등
- **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」 제3조

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.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^{*}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,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.

* 이상 작동 등으로 인한 화재, 기계적 손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, 해당 조사에서는 온도조절기 단락, 전동기 구속 조건으로 시험함.

□ 저온화상·피부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표시는 개선 필요

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.

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,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^{*}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.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^{**}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.

- * 40~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, 색소 침착, 붉은 반점, 가려움증, 물집 등이 있음(질병관리청)
- ** 질병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.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.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

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·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,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.

<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>



□ 소형 마사지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, 소비자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

다리·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·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,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^{*}.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.

*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. 다만, 눈 마사지기의 경우, 전원과 관계없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온열, 소음, 이상 운전 등 개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함.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▲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, ▲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,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, ▲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, ▲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, ▲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www.ciss.go.kr 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**핫라인**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- 붙임 1. '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' 결과 및 사례
 - 2. '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'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
 - 3. 소비자 주의사항





붙임 1

'온열 다리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' 결과 및 사례

1 위해정보 분석 결과

□ (현황)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는 '22년 506건, '23년 551건, '24년 640건이 접수되어 꾸준히 증가함.

(단위: 건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(~10월)	계
건수	506	551	640	464	2,161

□ (위해부위별 접수현황) 전기 마사지기 중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438건 분석결과, '다리, 발'이 205건(46.8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'몸통(흉부·복부· 문부·등)' 73건(16.7%), '머리, 얼굴' 59건(13.5%) 등의 순이었음.

(단위: 건, %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(~10월)	계 (비율)
다리, 발	37	26	81	61	205 (46.8)
몸통	21	15	17	20	73 (16.7)
머리, 얼굴	18	12	12	17	59 (13.5)
목, 어깨	3	7	11	33	54 (12.3)
팔, 손	7	8	10	11	36 (8.2)
기타	5	3	2	1	11 (2.5)
계	91	71	133	143	438 (100.0)

 □ (위해증상별 접수현황) 가장 비중이 큰 '다리, 발' 부위의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, '화상'이 113건(55.1%)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, '피부 등 손상'이 44건(21.5%) 등 순으로 나타남.

(단위: 건)

구분	화상	피부 등 손상	타박상	기타	계
건수 (비율)	113 (55.1)	44 (21.5)	15 (7.3)	33 (16.1)	205 (100.0)

2 주요 위해사례

[사례 1]	양쪽 종아리에 온열 마사지기 사용 후 수포를 동반한 화상 을 입음('24.6.).
[사례 2]	다리 마사지기 사용 후 피부가 손상되어 병원에 방문하자 '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및 감염성 피부염' 소견을 받음('24.8.).

붙임 2 '온열 다리 마사지기 심충조사'개요 및 결과

1 조사 개요

- □ (조사목적) 건강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시중에 다양하게 유통되는 소형 마사지기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
- □ (조사대상) 소형 전기 마사지기 중 ①위해부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다리·발 전용이고, ②위해 증상이 가장 많은 '화상'과 관련된 온열 기능이 있으며. ③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^{*}된 **온열 다리 마사지기 10종**(무선 8종, 유선 2종)
 - * 직류 42V 이하(유선) 또는 전지(무선)를 전원으로 사용
 - ※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위 순위 상위 제품 및 위해정보 접수 건수 상위 제품 선정
- □ (조사내용) 시중 유통제품을 구입하여 시험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
 - o (시험검사) 안전인증대상 전기 마사지기의 안전기준*을 준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시 최고 온도 시험
 - * KC 60335-2-32(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), KC 60335-1(일반 요구사항)

구분		내용	기준 온도	
온도 상승 (11절)		통상 사용 상태에서 표면 온도 확인	 전열소자 마사지 패드: 50℃¹⁾ 이하 그 외 마사지기: 50K²⁾이하 	
이상 운전 (19절)	온도조절기 단락	온도조절기 단락 시 표면 온도 확인	• 없음.	
	전동기(모터) 구속	전동기 구속 상태에서 전동기의 권선 온도 확인	• 150℃ ³⁾ 이하	

- 1) 최대 2시간 동안은 50℃를 초과하여도 되지만, 85℃를 초과할 수는 없음.
- 2) K(온도상승값): 측정 부분의 최고온도(t2)에서 주위 온도(t1)를 뺀 절댓값(K = t2 t1)
- 3) 절연 정도에 따라 기준치가 상이하나, 가장 낮은 기준치를 적용
- (실태조사) 제품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의문구 및 직류전원장치 (어댑터)·전지(배터리)의 KC 인증정보* 등 표시실태 확인
 - * 조사대상 전 제품은 인증 제외되나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 및 전지는 각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

2 조사 결과

- □ (시험검사)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준용 기준에 적합하였음.
 - (온도 상승) 정상 작동 중 표면 온도 측정 결과, 마사지 패드 형태 기기의
 최고 온도는 27.6~43.1℃, 그 외 기기의 온도 상승은 16.4~28.9K로 확인됨.
 - (이상 운전) 온도조절기 단락 시 표면 온도는 37.7~72.2℃, 전동기(모터) 구속
 상태에서의 모터 온도는 46.6~86.2℃로 측정됨.
- □ (실태조사)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**안전사고 예방 및 정보제공 강화**를 위한 **표시개선**이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**필요**하였음.
 - (주의사항) 위해정보 및 제품 실물 검토 결과, 사용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
 있는 위해(우려) 요인에 대한 주의사항 등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.

구분	위해(우려) 요인 내용
저온화상	온열 기능을 맨살에 사용하거나 연속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
피부질환	피부 마찰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 발생 가능
의료기기 오인	제품을 질병 치료·경감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
외부충격	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화재·폭발 우려
고강도	부적절한 사용법 안내에 따른 과도한 신체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

- (인증정보) 일부 제품이 전지의 KC 인증번호를 제품(라벨 등)에 미표시* 하여 인증 여부 확인에 제약이 있었음.
 - * 전지 자체(의무 표시사항)와 외부 포장에는 표시됨.

3 조치 결과

- □ (개선 조치) 조사대상 10개 제품을 수입·판매하는 각 사업자 대상 위해(우려) 요인별 표시개선을 권고하여 해당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함.
 - (조치 내용) 각 사업자는 제품 본체, 설명서,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권고 사항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 추가, 인증표시 강화 등 개선 계획을 회신함.

구분	저온화상	피부질환	의료기기 오인	외부충격	고강도	전지 KC 인증정보
해당 제품 수 [*]	10개	6개	3개	8개	1개	1개

* 중복 포함

연번	형태	제품명	참고사진	모델명	수입 [*] /판매사	전원(정격)
1		발란스핏 종아리 마사지기(지퍼형)	Marie of Marie of	95PBCM02Be	㈜라온글로벌/ ㈜어댑트	전지(3.7V)
2		비타그램 종아리 온열 공기압 마사지기		VG-LAM2311	㈜비타그램	전지(3.7V)
3		센시안 에어슬리머 종아리 마사지기		DKP-F011	동국제약㈜	전지(3.7V)
4	무선	스파알 포터블 종아리 마사지기		-	에이치엘비 글로벌㈜	전지(3.7V)
5	TU	에어딕 종아리 마사지기 S3		ALE24-S3HA	㈜비브아	전지(3.7V)
6		클로 에어하임 종아리 마사지기	0	FE-7113	㈜클로	전지(3.7V)
7		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V3		P005	㈜풀리오	전지(3.7V)
8		휴그랩 다리 마사지기		HU-05	㈜니즈테크	전지(3.7V)
9	O 14	슬릭 종아리 마사지기		CMF-680	복정제형㈜	직류전원 장치(24V)
10	유선	오아 다리360 마사지기		OMS-006WH	오아㈜	직류전원 장치(24V)

붙임 3 소비자 주의시항

온열 다리 마사지기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

- □ 저온화상·피부 손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사지기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닿거나 마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□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,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.
 - o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1회당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한다.
- □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.
- □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나 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.
 - o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한다.
 - o 노약자,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하에 사용한다.
- □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한다.
 - o 제품을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.